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2021. 6. 9.(수)
제391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**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**하고,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**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**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조~제2조)

○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)

○ 종합계획, 실태조사, 육성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~제7조)

○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가. 제출 배경

○ 치유농업은 농업·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**심리적·인지적·신체적 건강을 도모**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,

○ **2000년대부터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***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, 학습장애, 정신질환자, 마약중독자,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
* 네덜란드 실제 농업 현실에 부합한 치유농장 경영시스템 중심, 영국은 원예치료, 독일과 핀란드는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특화

○ 우리나라에서는 **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3월에 제정**됨에 따라 지자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어,

○ 강원도(2017년)를 시작으로 경북, 경남, 충남, 경기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·시행되고 있음.

* 타 시도 조례 : 강원('17.6. 최초), 경북('18.12.), 경남('19. 3.), 충남('20.3.), 경기('19.10.), 전남('20.3.), 전북('20.4.), 세종('21.3.),

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〉

❖ 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)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· 보급
2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
3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 · 체험 · 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
4.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2021. 5. 31일 **충청북도지사가 제출**하여, 2021. 6. 1일 우리 위원회(의안 번호 729호)에 회부된 안건으로,

○ **조례안 형식**은 **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**되어 있음.

○ **조례 제정의 목적**은

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**충청북도의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**을 위함임.

○ **안 제2조**는 본 조례안의 기본 개념인 **'치유농업*'**, **'치유농업서비스'**의 정의를 규정함.

* **치유농업** :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

○ **안 제3조**는 치유농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**도지사의 책무**를 **규정**하였음.

○ **안 제5조 ~ 제8조**는 도지사로 하여금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 방향,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이 포함된 **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, 육성지원, 협력체계구축 등**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**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위임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**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·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연계한 활동을 의미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,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
- 본 조례안을 계기로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 치유농업을 치유관광 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,

-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**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**됨.